

제1분과

지방정부 자산실사의 성과와 과제

- 유형자산과 공유재산·물품의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

김 현(한미회계컨설팅)

전 중 열(서울산업대학교)

I. 서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이하 “발생주의회계제도”라 함)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주의회계제도가 법제화된 제도로 정착된다. 중앙정부는 사업별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다소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2008년부터 발생주의회계제도의 적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의 발생주의회계제도 법제화를 앞두고 사전작업으로 분주한 상태이다. 그 중 특히 우선적으로 작업이 필요한 것이 개시재무제표의 작성 및 기초자산·부채의 실사평가 문제이다. 기업과 마찬가지로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발생주의회계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시점에서 개시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이하 “지방회계기준”이라 함)²⁾은 부칙 제1조에서 기준의 시행일을 2007년 1월 1일로 규정하면서 기준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에 대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를 별도지침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기준에 규정된 4종의 재무제표³⁾ 중 재정상태보고서만을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개시재무제표는 곧 개시재정상태보고서를 의미한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순자산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개념의 성격인 것을 고려해보면 개시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중점이 두어지는 것은 자산 및 부채 분야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원,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및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성격의 다양성 및 자료관리의 미비 등으로 인해 자산실사 및 평가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실제로 시험운영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노

1) 기업의 경우 회사 창업시에 창업자본금과 취득한 보증금, 비품, 설비 등의 자산을 포함하는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다.

2) 2005년 12월에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안을 말한다.

3)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로 구성된다.

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산의 실사평가와 관련하여 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회계상의 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II장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현황과 개시재무제표 작성과정을 살펴보고, III장은 기초자산의 실사평가에 대하여 설명하며, IV장은 유형자산과 공유재산·물품과의 차이를 조사하고, V장은 기초자산 실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며, VI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한다.

II. 발생주의회계제도 도입현황과 개시재무제표 작성과정

2.1 발생주의회계제도 도입현황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발생주의회계제도는 <표 1>과 같이 1차에서 4차에 이르는 단계적인 도입 및 확산과정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부채의 실사평가도 이러한 단계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2차 및 3차 시험운영기관은 이미 기초자산·부채에 대한 실사평가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말까지 누락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이를 반영하여 개시재무제표를 확정하고, 4차 시험운영기관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06년 상반기 중 실사 및 하반기 중 평가작업을 거쳐 2006년말까지 개시재무제표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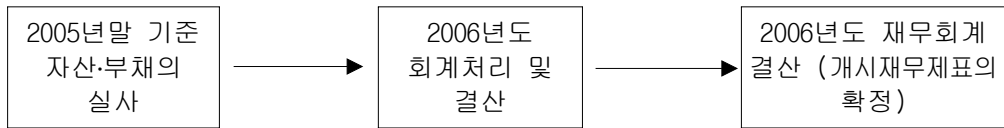
구분	시험운영기관	도입년도	기관수	기관누계
1차	부천시, 강남구	1999년	2	2
2차	대전광역시 본청, 서구, 전라북도 5개	2003년	7	9
3차	전라남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 41개 시군자치구	2005년	54	63
4차	서울시, 186개 시군자치구	2006년	187	250

자료: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 회의자료(행정자치부 2006). pp. 15-16.

2.2 개시재무제표 작성과정

행정자치부는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업무처리 매뉴얼」(이하 “업무처리 매뉴얼”이라 함)(행정자치부 2005)에서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실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처리 매뉴얼은 개시재무제표를 <그림 1>의 과정을 거쳐 작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개시재무제표의 작성과정



자료: 업무처리 매뉴얼(행자부 2005). p. 131.

여기서는 기초자산·부채의 실사평가와 개시재무제표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업무처리 매뉴얼에서 언급한 개시재무제표는 기초자산·부채의 실사평가와 1년간의 시험적용을 거쳐 작성되는 사실상의 시험적용 결산재무제표의 성격을 가진다. 즉, 시험적용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하되 이 중 재정상태보고서만을 기초로 법적 시행시기인 2007년부터 발생주의회계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⁴⁾

Ⅲ. 기초자산의 실사평가

3.1 자산의 정의, 인식기준 및 평가기준

지방회계기준 제11조는 자산을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정의한다.

4) 시험적용 결산은 전체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하되 개시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만을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방회계기준 제12조는 “자산은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방회계기준 제49조 제1항은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2 자산의 분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기업의 유형자

<표 2> 자산의 분류

대분류	회 계 과 목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미수세금, 결손처분충당금, 미수금, 단기융자금, 지방자치단체내 단기채권, 선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미수전입금, 미수지방교부세, 미수지방양여금, 미수조정교부금, 미수재정보전금, 미수보조금, 미수징수교부금, 재고자산 등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투자유가증권, 장기융자금, 장기미수세금, 장기미수금, 지방자치단체내 장기채권, 보증금, 민간위탁금, 투자부동산 등
일반유형자산	토지, 건물및부속시설,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입목, 건설중인 자산 등
주민편의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도로및부속시설,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
기타비유동자산	무형자산, 유산자산, 천연자원 외에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

자료: 자산및부채관리교육교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성도회계법인 2004). p. 9.

산에 해당하며,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은 정부회계에 나타나는 특유한 형태의 자산이다. 이러한 각 유형별 자산에 대한 회계과목은 <표 2>에 예시되어 있다.

3.3 기초자산의 실사방안

기초자산·부채의 실사평가에 있어서는 주로 자산의 실사평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된다.⁵⁾ 특히, 자산 중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은 공부상 자료가 없거나 내용기재가 부실하여 실제 현황 및 가액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자산의 관리수준 및 회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자산의 실사방안을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기초자산의 실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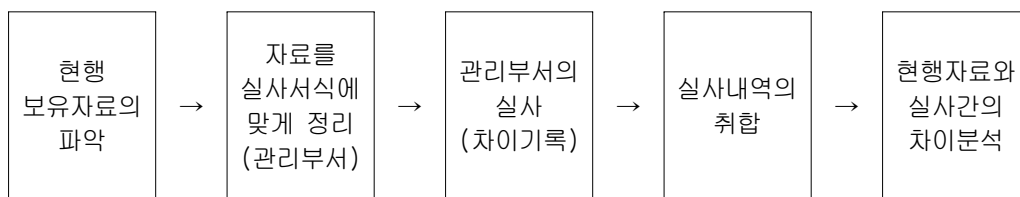
유형	자산항목	실사방안
현행 자료활용 실사	공유재산, 물품 (유가증권, 시설자산)	공유재산, 물품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과소, 읍면동에서 공부확인, 필요시 현장조사
서면조사	유동자산, 투자자산 등 (자금, 미수채권, 채권, 미수수익 등 발생주의 고유항목)	현행 세입세출결산서, 부서별 보관자료를 기초로 서면조사
자산미포함	국·공유재산, 문화재, 동물, 전시물 등 관리책임자산	현황을 파악하되 가액은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조사

기초자산의 실사에서 많은 어려움과 대안제시가 요구되는 분야가 바로 첫 번째 유형이다. 이것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서 보유중인 재산정보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이다. 비록 공유재산이 토지 및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을(예: 도로건설가액, 공원조성가액) 충분히 반영하지

5)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주요 항목인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에 의한 발행승인제도하에서 비교적 회계정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상용인부 등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실과소별로 자료를 관리함에 따라 비교적 손쉽게 정보입수 및 산정이 가능하다. 재화 및 서비스의 수취에 따른 미지급채무 등의 발생주의 부채는 지방회계기준 부칙 제5조에 의해 출납폐쇄기한을 발생주의회계에 도입함에 따라 실제 발생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부채는 자산에 비해 실사 및 평가가 비교적 용이하다.

못하고 있고 물품은 정수물품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어 회계상 자산개념과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이러한 점이 현행 자료의 활용필요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현행 공부상 자료(예: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유재산 결산내역, 물품 결산내역 등)를 실사에 적극 활용하면 현행 재산자료와 회계상 자산간 차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현행 자료활용 실사항목의 처리단계



3.4 기초자산 평가의 특징

업무처리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초자산·부채의 실사평가는 지방회계기준의 취득원가주의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자산의 평가에 있어 취득원가주의를 채택하되 취득원가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평가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유자료의 불비 등으로 취득원가의 파악이 극히 제한적인 토지 및 입목 등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대체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은 여러 가지의 유형자산으로 이루어진 복합자산이므로, 6) 구성요소인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의 평가방법은 일반유형자산의 평가방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업무처리 매뉴얼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 유형자

6) 업무처리 매뉴얼에 의하면,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은 해당 시설과 관련된 토지와 시설물은 물론 비품과 차량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예컨대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부지, 건물은 물론 이동도서차량, 보유도서, 서가 등 비품이 모두 포함된다.

산을 중심으로 실사서식 및 방법을 제시하면서 유동자산, 유동부채, 대손충당금 및 장기대여금 등은 기초실사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기초자산·부채의 실사평가에 있어 일부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도 실사 및 평가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유형자산의 실사에 있어 공유재산, 물품 등 현행의 재산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실사서식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실사절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수량차이, 가격차이 등 차이분석정보를 적극적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복합자산인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과 토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실사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토지와 시설과의 관련성을 100% 실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번위주의 토지대장에 의존하므로,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토지를 일반유형자산의 토지에 일괄하여 표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⁷⁾

IV. 유형자산과 공유재산·물품과의 차이

4.1 공유재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조에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된다.

4.1.1 행정재산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이 있다.

- ① 공용재산: 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건설중인 재산

7)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실사결과를 보면 시설물만 존재하고 토지가 없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러한 경우는 실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번위주의 토지대장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② 공공용재산: 자치단체가 직접 그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③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4.1.2 보존재산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4.1.3 잡종재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4.2 물품

지방재정법상의 물품은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에서 ① 현금, ② 유가증권, ③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48조).

4.3 재산과 자산의 차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재산과 지방회계기준 및 업무처리 매뉴얼상의 자산간에는 범위, 인식시점, 가액산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특히 기초자산의 실사평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 자산은 재산에서 포함하지 않는 발생주의의 기간계산에 따른 자산(예: 선급비용, 미수수익),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리스자산, 건설중인자산 등을 포함한다. 각 부서의 현황자료(예: 공원은 공원녹지과의 공원대장, 도로는 도로과의 지방도 및 국고지원지방도 포장현황)를 참고하여 실사하고 있으므로,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의 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에 큰 어려움이 있다. 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현황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초자료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리스자산 등의 발생주의 자산은 상대적으로 실사평가에 어려움이 덜한 편이다.

둘째, 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뿐 아니라 취득에 있어 소요된 부대비용을 포함한 자산가액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액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의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 예컨대, 토지의 대체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업무처리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상에 의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원가에 상당히 못 미치게 된다. 비품의 경우도 조달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의 반영이 사실상 곤란하다.

셋째, 인식시점에 있어 재산은 공부상 등재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자산은 검사(검수)시점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기준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기초자산 실사에 있어서는 양자 간의 사실상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건설중인자산은 검사를 기준으로 자산에 계상하므로 실사기준일 현재 검사가 완료된 공사는 회계상의 자산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4.4 사례에 의한 차이분석

발생주의회계 유형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과 현금주의회계 공유재산·물품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표 4>와 같이, 사례는 광역자치단체 1곳과 기초자치단체 2곳이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

첫째, 사례 중 기초B는 자치구, 기초C는 군(郡)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2003~2004년)와 세입세출결산서의 정보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하였다.

둘째, 공유재산 중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은 제외하였다. 즉, 토지, 건물, 구축물 등 회계상의 유형자산과 성격이 같은 것을 기준으로 재산을 비교하였다.

셋째, 입목과 건설중인자산은 유형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재산현황에 입목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매우 적게 기재되는 현실과 건설중인자산이 통상 공유재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넷째, 기계장치는 동산으로 보아 비품, 차량 등의 가액에 포함하였다.

다섯째, 복합자산인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는 비품과 차량운반구 등의 동산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시설물에 포함하였다.

<표 4> 유형자산과 공유재산·물품과의 비교

구분	발생주의회계: 유형자산(A)				현금주의회계: 공유재산·물품(B)			
	토지	시설물 (건축물)	비품, 차량 등	계	토지	건축물	물품 등	계
광역A	41,722	33,812	932	76,466	47,585	14,369	2,311	64,265
기초B	3,713	1,080	161	4,954	7,716	506	71	8,294
기초C	2,018	8,698	168	10,884	1,250	429	100	1,780

사례를 중심으로 유형자산과 재산(공유재산, 물품)간의 차이를 분석한 <표 5>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례에서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자산이 재산보다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광역A와 기초B의 경우에 재무제표상 토지가액이 공유재산현재액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과소별로 구분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수량이 누락되었거나 혹은 가액평가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대체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액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발생주의회계에서 시설물은 현금주의회계 건축물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약 20배까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지역인 기초C의 유형자산이 크게 나타난 것은 공유재산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도로 등(사회기반시설)과 주차장 등(주민편의시설)이 재무제표상에 계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농촌지역인 기초C의 전체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511.4%)은 전체 시설물에서 차지하는 도로 및 주차장 등의 비중이 도시지역인 기초B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초B와 기초C에서 비품, 차량 등은 물품 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물품현재액보고서 등이 정수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비정수 항목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광역A의 경우 비품·차량 등보다 물품 등이 크게 나타난 것은 많은 물품이 발생주의회계에서 시설자산으로 분류되었거나, 실사조서 작성에 있어 일부 물품현황이 누락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5> 유형자산과 공유재산·물품과의 차이분석

구분	전체 차이(A-B)		토지 차이		시설물(건축물) 차이		비품, 차량 등 차이	
	금액	비율 (A-B)/B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광역A	12,201	19.0%	-5,862	-12.32%	19,443	135.3%	-1,380	-59.7%
기초B	-3,339	-40.3%	-4,003	-51.88%	574	113.3%	90	125.9%
기초C	9,104	511.4%	768	61.42%	8,269	1925.2%	67	67.1%

V. 기초자산 실사에 대한 시사점

기초자산 실사평가의 특징과 실사평가 사례를 살펴보면 향후 4차 시험운영기관의 기초자산의 실사평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실과소별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토지, 건축물 등) 및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등)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실과소, 읍면동별 실사조서를 작성하여 보충적인 현황에 대한 본조사를 실시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방법에 대한 내용을 업무처리 매뉴얼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액정보의 종합적 판단을 위한 최소한 토지, 건축물, 물품의 경우 전체 재산가액과 회계상 자산가액간 비교를 통하여 전체적인 적정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치에 대한 설명력을 상실하게 되면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자산실사를 위한 회계부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칫 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실사평가가 종료된 이후 유형자산과 재산간의 차이원인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며, 분석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에서 “자산과 재산간 차이분석명세서”와 같은 서식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무상 모든 자산항목에 있어 차이분석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에 있어서는 차이원인이 수량(면적, 개수)차이 인지 가액(단가, 전체가)차이인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자산과 재산관리에 의한 재산간의 차이내역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VI. 결 론

현재 중앙정부는 정부회계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재산, 물품, 채권, 채무 등 예산회계적 저장(stock)에 대한 결산을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으로 대체하려고 하므로 양자간 정보호환성 내지는 정보차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산의 실사평가와 관련하여 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회계상의 자산(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개시재무제표 또는 기초자산·부채의 실사평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발생주의회계제도 도입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자산가액을 결정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참고문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성도회계법인. 2004. 자산 및 부채관리 교육교재.
행정자치부. 2005.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업무처리 매뉴얼」.
_____. 2006.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 회의자료(2006.3.17).